

‘2019 시민참여형 새활용캠프 사업’  
새활용장터 기획·운영·관리

소 속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 
전 화 02-2153-0421  
이 메 일 ppseil@seouldesign.or.kr

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  
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

- 1 -

‘2019 시민참여형 새활용캠프 사업’  
새활용장터 기획·운영·관리  
- (변경)과업지시서 -

새활용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새활용캠프 사업 관련,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주말행사 활성화와 집객 확대를 위한 새활용장터 기획·운영·관리에 대한 과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
**1. 행사개요**

- 행 사 명 : 2019 새활용장터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
- 행사기간 : 2019년 3월~7월
- 행사장소 : 잔디광장, 중앙광장, 새활용거리 등 서울새활용플라자 일대  
※ 미세먼지, 흡사, 흡한, 우천 등 일기불순시 실내행사로 대체



- 추진목적
  - 업사이클 제품과 서비스, 도농상생 웰빙 먹거리 등 새활용 콘텐츠 유통 모델 구축 및 정착

- 2 -

- 토/일요일을 포함한 가족단위 주말 방문 시민을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업사이클링 콘텐츠 체험기회 제공으로 집객 유도
- 업사이클 라이프스타일, 재활용 의식 확산을 통한 재활용 문화 조성

## 2. 과업개요

- 과업명 : 재활용장터 기획·운영·관리
- 수행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9년 8월 16일까지
- 소요예산 : 금 일천사백구십구만삼천원 정(W14,993,000)

## 3. 과업추진내용

※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편의상 “서울디자인재단”을 “발주부서”, “과업수행자”를 “계약상대자”로 칭한다.

### 가. 과업 내용 및 범위

#### 1) 재활용장터 운영기획

- 재활용장터 주제 : 제로 웨이스트, 플라스틱 프리, 건강(웰빙)
- 재활용장터 구성 : 1차농산물 + 가공품 + 요리/조리

#### 2) 재활용장터 운영 제반시설 구축 및 연출 기획

- 재활용과 재활용, 친환경 컨셉으로 매대, 공간 등 연출 컨셉 제안
- 재활용장터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및 기반시설, 장비 구축 디자인 제안(야외행사용 천막, 테이블, 의자 등)
- 그릇대여소, 일회용품 없는 SUP 홍보부스 운영 등 제반환경 점검
- 재활용장터 홍보 아이덴티티 및 홍보 콘텐츠 개발과 홍보 수행

#### 3) 재활용장터 운영

- 기간 : 2019년 3월~ 7월, 월 4회, 총 15회
- 재활용장터 참여 셀러 섭외 및 관리 (회당 5개 셀러 이상 참여)
- 재활용장터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 일감 배치 및 관리
- 재활용장터 행사 아카이빙
- 먹거리 교환 이벤트 등 장터 활성화를 위한 자체기획 부대행사 제안·운영

### 나. 과업수행 절차 및 단계별 보고

- 1) 착수보고 : 사업추진방향, 세부사업계획, 추진일정 등(계약 후 14일 이내)  
※ 착수계 제출 포함(과업추진계획, 추진체계, 예산계획, 일정계획 등)
- 2) 수시보고 : 주간회의, 협의사항, 긴급변경사항 등

- 3 -

- 3) 중간보고 : 주요 추진사항 및 진척도 보고, 문제점 진단 및 향후추진계획
- 4) 결과보고 : 용역 완료 전 전체 추진내용 및 과업결과물 보고  
※ 상기 보고회 개최여부 및 내용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“발주기관”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

### 다. 성과품

- 1) 결과보고서  
※ 공통 1식(USB 또는 외장하드)  
- 관련 보고서, 문서, 그래픽, 도면, 디자인 데이터 일체  
- 사진, 동영상 데이터 등 기타 과업 관련 데이터 자료 일체
- 2) 제출시기 : 용역 종료 후 7일 이내  
※ 상기 성과품의 형식과 수량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“발주기관”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

### 라. 청구 및 지불

- 1) “계약상대자”가 과업 완료 후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금청구서, 거래명세서 등 필요 문서 일체를 “발주부서”에 제출해야 함
- 2)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금지급 전에 “발주부서”에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절차와 내용, 규정 등은 “발주부서”의 내규에 따름

## 4. 과업수행 일반지침

### 가. 일반사항

- 1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“발주부서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- 2)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,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“발주부서”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.
- 3) “계약상대자”는 과업 종료 후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제안서,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역을 검사하고 “발주부서”에 보고해야 한다.

### 나. 과업수행 및 과업내용 조정

- 1)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.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

- 4 -

“발주부서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2) “발주부서”는 참여요원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- 3) 과업 수행 중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발주부서”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.
- 4) “계약상대자”는 과업 수행 인력의 모든 인적·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5) 본 과업지시서와 “계약상대자”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,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발주부서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협의한다.
- 6)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.

#### 다. 성과품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

- 1)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기본사항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, 운영 및 소유권 관련 하여서는 “발주부서”에 귀속한다.  
※ ‘지식재산권 귀속’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함.
- 2)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-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“발주부서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. 다만,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보안, 영업비밀 등)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,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.
  - 본 사업 이전에 “계약상대자”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(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)의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에 사용권이 부여됨.
  -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 제56조(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)에 따름.
  -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, 산업재산권,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, “발주기관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.

- 5 -

- 3)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부서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과품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#### 라. 지적재산권 주의사항 및 보안

- 1)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“계약상대자”는 모든 디자인 제작물에 대해 폰트 등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.
- 3) “계약상대자”는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.
- 4)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“발주부서”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5) “계약상대자”는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,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“발주부서”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전에 “발주부서”와 협의하고 신원조회,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마.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

- 1) 과업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,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해야 함
- 2)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 책임자 및 담당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가 교체할 수 있으며,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
- 3)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업체의 책임하에 선정하여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협력업체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발주처가 감독권을 가진다
- 4) 모든 계획은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때의 승인은 문서로 하고 과업 관련 제작물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
- 5)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요 내용은 문서로 함
- 6) 과업 수행 업체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 진행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,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 발주처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
- 7) 용역대가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 운영, 기타 소요비용 일체로 하되, 과업 수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을 지불함
- 8)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,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
- 6 -

- 9)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성과품 및 산출물을 제공할 수 없음

## 5. 계약의 해지

- 가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"계약상대자"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 - 2)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  - 3) "발주부서"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  - 4)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  - 5) 과업 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
  - 6)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  - 7)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조건에 미달 또는 위배한 경우
  - 8) "발주부서"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 - 9)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10)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  - 11)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함
  - 12)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  - 13)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"발주부서"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- 14) 사업내용 검토단계에서 재단과 자문위원회의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재단과 협의 후 수정·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하며, 재단이 정한 보고일정 미준수, 협상 내용에 의거한 사항 미이행 시, 계약해지의 사항으로 해당되며 계약금액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
- 나.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, "발주부서"는 "계약상대자"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"계약상대자"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, "발주부서"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"계약상대자"에 요구할 수 있음. 끝.